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안 1-5-3-2, 4-3-2-10)
용도별 소요면적,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범위를 기존 30%에서 총량 범위 내로 완화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지침 내 상충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5장제3절 1-5-3-2.(1)제1항 중 “소요면적중 30%”를 “소요면적의 총량”으로 하고, 같은 절 1-5-3-2.(2) 중 “도시기본구상도”를 “토지이용계획도”로, “도시기본구상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을 “토지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절 1-5-3-2.(3) 중 “다음의 경우 이를 일부”를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총량 범위내에서”로 하고, 같은 절 1-5-3-2.(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절 1-5-3-2.(5)제7항 중 “5만m²”를 “5만m²”로 하고, 같은 절 1-5-3-2.(6) 중 “도시·군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차기단계로”를 “도시·군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로, “순연하는”을 “조정하는”으로 한다.

제4편제3장제2절 4-3-2-10.(1)제1항 단서 중 “지침 1-5-3-2.(7)”을 “지침 1-5-3-2.(5) 및 1-5-3-2.(7)”으로 한다.

부 칙 <제1695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

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기본
구상에서 제시하는 토지이
용계획의 보완이나 현지어
건상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① ~ ③ (생략)

(3)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기
본계획상의 단계별 토지이
용계획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후
개발여건의 변화로 차기
단계로 개발을 유보하고
자 하는 경우

②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
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퍼센트
범위(시가화예정용지와 구
분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
위계획구역이 책정된 경우
에 산업·유통형이나 관광

----- 토지이용
계획-----

-----.

① ~ ③ (현행과 같음)

(3) -----

----- 지역여건 또
는 개발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총량 범위내에서 --
-.

<삭 제>

<삭 제>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총량이 아닌 20년 총량 범위) 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4) (생략)

(5)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① ~ ⑥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5만m² 이하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6)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군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차기단계로 변경하여 이와 관계되는 시설결정을 순연하는 경우

(7)·(8) (생략)

(4) (현행과 같음)

(5) -----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5만m² -----

(6) ----- 도시·군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
----- 조 -----
----- 정하는 -----

(7)·(8) (현행과 같음)

